

■ 화제의 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층간소음분쟁 해결의 실마리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모씨가 아래층에 사는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67)에서 “김씨 등은 박씨의 집에 들어가거나 박씨 집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김씨가 박씨의 집을 찾아오거나 현관을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박씨 가족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박씨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박씨가 추가로 신청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지 마라’, ‘고성 지르지 마라’, ‘천장 두드리지 마라’, ‘이웃에게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와 김씨 등은 서로 이웃으로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래층 김씨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층간 소음으로 발생한 폭행 등에 대해 벌금형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은 있었지만 어느 선까지 항의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판결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결정은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두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면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취지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는 용인될 수 있지만, 위층 주민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대략의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수인 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

- 층간소음 항의, 전화·문자로... 윗집 방문은 안돼 - 조선일보 | 2013. 4. 15.
- 집 침입 층간소음 피해 있어도 이견 안돼 - 중앙일보 | 2013. 4. 15.